제15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60조(계약목적) 기관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의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61조(계약 기간)

1.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6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자 보호를 위한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 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5.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미납 연체하였을 때

라.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한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비용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63조(급여비용/ 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 및 본인부담금 납부의 규정에 따른다.

2. 기관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 제40조 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 수주에 따라 60%, 40%를 감경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이・미용비

다.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원에서 청구하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기관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 활동 지원, 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기관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8. 기관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의 경우는 해당 급여 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의 경우는 50%만 산정한다.

9.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3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3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4, 5등급인 경우 3등급 기준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1일당
노인전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84,240
② 장기요양 2등급	78,150
③ 장기요양 3, 4, 5등급	73,800

※ 요양보호사 수가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1등급 80,630원, 2등급 74,810원, 3~5등급 68,990원

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외박의 경우 급여비용의 50%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 15일까지 산정)

11.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30일 기준)

가. 식사재료비 1식 2,500원, 간식비 일일 1,000원일 경우 산정

나. 입소 본인부담금 20%(생활 수준에 따라 60%, 40% 감경 적용)

■ 등급별 입소비용 (2024.01.01.)

요양등급	일일급여	월 금액 (30일 기준)	입소자 부담료(30일 기준)				비고
			개인부담 보험료	식 대	간 식	계	
1등급	84,240	2,527,200	505,440	225,000	30,000	760,440	일반
			303,260	225,000	30,000	558,260	40%
			202,180	225,000	30,000	457,180	60%
2등급	78,150	2,344,500	468,900	225,000	30,000	723,900	일반
			281,300	225,000	30,000	536,300	40%
			187,560	225,000	30,000	442,560	60%
3,4,5	73,800	2,214,200	442,800	225,000	30,000	697,800	일반

등급			265,680	225,000	30,000	520,680	40%
			177,120	225,000	30,000	432,120	60%

※ 상급침실 : 1일 10,000원

13.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용(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4. 본 기관의 비급여 부분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4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2. 단, 동 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부담 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는 제외된다.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에 의한 을의 요구가 있는 때는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을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제165조(비용수납)

1. 입소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납하여야 한다. 입소비용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부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계좌 시에는 "00 은행 00000-00-000-000(예금주: 0000 요양원)"으로 한다.
3.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납한다.
4. 급여청구서는 서비스제공 이후 다음 달 5일 이내로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단, 토·일요일은 제외)

제166조(이용료 등 급여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제공하였을 경우
   라.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마.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
4. 제2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 수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한다.
   라. 서비스이용 절차 방법은 장기요양 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 급여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16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6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 인수방법: 입소 보호의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다.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한 ‘을’ 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본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자 신원 인수인의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 신원 인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 신원 인수인의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입소자 신원 인수인의 강제집행, 가 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한 때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한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수납하여야 할 비용을 빈번히 지연시킴으로써 납부능력이 없으며 ‘갑’과 ‘을’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라.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바.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사.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 이 판단할 경우

아.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자.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차. 기타 이 계약 이행에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을 인수하며, 불이행 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169조(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떼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70조(퇴소 및 정원)

1. 수급자(보호자는) 본 규정 제185조의 규정의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 **퇴소상담** 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기관과 직원은 본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본 기관은 소정의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 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단, 사유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퇴거 시 선불 및 보증금 등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임금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
4. 기관에서 원을 요청의 경우에도 수급자(보호자)는 지체없이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제171조(사망)
1. 보호자가 없는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장례절차는 수급자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기관에서 결정하며, 거주 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4. 수급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과실이나 현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직원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

제172조(입소자 사망에 따른 유류 금품 처리) 수급자 사망 및 유류금품 처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 화장이나 매장, 장례절차에 대한 의견은 입소 어르신의 의견이 보호자나 시설장의 의견에 우선 한다.
2.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의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의 유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는 때에는 유류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류 금품 처리는 입소자의 유언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자가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을 때는 연고자의 의사에 따른다.
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인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가 부양을 회피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고, 국가 또는 기관이 부양의무 없는 3자로서 어르신을 부양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유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기관에 귀속하여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